

(앞쪽)

과세연도 . . . ~ . . . 법인종류별 구분

상호 또는 법인명	사업자등록번호
-----------	---------

1. 상시근로자 수 계산

구 분	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												① 합계	② 개월수	③ 상시 근로자수 (=①÷②)	유형별 상시근로자 수					
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청년등					⑨ 청년 등외				
												④ 청년				⑤ 장애인		⑥ 고령자	⑦ 경력 단절 여성	⑧ 복합 이탈 주민	
해당 과세연도																					
직전 과세연도																					

2.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별 명세

[illegible]

[illegible]

신청인 _____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1. "㉓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"란: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습니다.
 - "㉒ 상시근로자"란에서 'N'을 선택한 경우 제외 사유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제10항)를 적습니다.(a)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, b)단시간 근로자, c)법인의 임원, d)최대주주(출자자) 및 그 친족, e)원천징수사실 미확인 근로자 등, f)기타)
2. "㉔ 단시간근로자유형"란: 단시간근로자 중 ㉒상시근로자가 'Y'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 - 가.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: 0.5,
 - 나. 가목의 단시간근로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제11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: 0.75

* 단시간근로자: 1주동안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)
3. "㉕ 내국인"란: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.(국적 무관)
4. "㉖ 수도권근무지"란: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가 수도권(서울/인천/경기)인 경우 Y로, 그 외의 경우 N으로 적습니다.
5. "㉗ 청년 여부"란: 해당 연도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필자는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6. "㉘ 해당연도 청년 제외시점"란: 해당연도 중에 청년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청년에서 제외되는 일자를 적습니다.
예시) 생일이 1994년 5월 28일인 직원(군미필)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청년이고 2024년 5월 28일부터는 청년이 아니므로 해당 칸에는 '20240528'을 적음
7. "㉙ 장애인"란: 장애인, 국가유공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.
8. "㉚ 고령자"란: ㉕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.
9. "㉛ 경력단절근로자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8제2항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, 결혼·임신·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.
10. "㉜ 북한이탈주민"란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.
11. "㉝ 정규직 전환자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8제4항에 따라 고용 중인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였으나 해당 연도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을 말합니다.
12. "㉞ 육아휴직 복귀자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8제5항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,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.